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행위 처벌강화〉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84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3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처벌 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9조 및 제170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169조(벌칙)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삭제>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이는 현행법상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사입법례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각각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

1)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³⁾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이나 원인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⁴⁾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주 등에게 재해발생 현장 보존이나 고용노동부 수사에 협조 등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온전한 보존과 엄정한 수사를 도모할

2)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방해 행위의 발생의 정도⁵⁾, 중대 재해 재발방지 효과 등을 고려한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형사처벌 강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이행 확보 및 범죄 예방 등 형사정책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와 산업재해 발생 은폐가 유사하게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⁷⁾ 법정형 상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체계, 다른 입법례, 처벌 강화의 실효성, 원인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폭행, 협박, 위계 등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안전보건

5) 최근 5년간('20년~'24.10월) 현장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된 건은 5건으로 중대 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방해 등의 위반이 현장에 만연해 있거나 처벌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큰 사항은 아니므로 처벌 강화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6)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임(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바63 결정).

7)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관리책임자 등이 현장 훼손을 교사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⁸⁾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8)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